

인천광역시 검단구 개방형직위(감사실장)
채용시험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 검단구에서는 개방형직위로 감사실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28일

인천광역시검단구인사위원회위원장

※ 임용직위 : 감사실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 직위	직 급	채용 인원	근무 기간	주 요 업 무
감사실장	일반직공무원 (지방행정5급)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개방형 5호)	1명	2년	1. 감사·감찰업무 추진 - 감사업무: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상급기관 감사 - 감찰업무: 공직감찰, 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 구민 고충처리위원회 및 청원심의회 운영 2. 청렴업무 추진 - 청탁금지법, 부패방지 및 청렴시책 추진, 부패영향평가, 청렴교육, 자율적 내부통제 추진, 이해충돌방지법 제도 운영, 직장내 괴롭힘 운영, 공직윤리 업무,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등 3. 구청장 직소민원 관리 - 직소민원 응대 및 조정·관리 - 공공갈등 관리 4. 기타업무 - 구민감사관 운영 - 수사기관 통보 범죄혐의 공무원 조사 처리 - 사전컨설팅 감사 - 가로환경 순찰 및 시민불편현장 민원처리 - 인권업무

※ 임용신분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함.

- **민간인의 경우에는** 임용약정을 통해 해당 직위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고, 임용기간 동안 임기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유지
-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해 해당 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2.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개방형직위)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감사기구의 장의 자격)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

3. 응시자격 기준 (기준일: 면접시험 예정일)

- 공통사항(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연령, 성별 및 거주지: 제한없음(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될 수 없다.

1.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자격요건**

– 다음의 경력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자 격 요 건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이하 "감사 관련 업무"라 한다)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 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래의 요건을 갖춘 사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2)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공무원 임용시험령」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5급 경력경쟁채용 등의 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나.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임용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할 당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
- ③ 중앙행정기관 외의 국가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기관의 관장 사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시험일정

공고기간	응시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2026. 10. 28.(수) ~ 11. 20.(금)	2026. 11. 16.(월) ~ 11. 20.(금)	2026. 12월중 (예정)	2026. 12월중 (예정)	2026. 12월중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홈페이지 게시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하며, 상기 일정은 변경 가능

5. 시험방법

○ 1차시험(서류전형) : 형식요건 심사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및 경력 등에 대한 기준 적합 여부 심사(적격 또는 부적격)
- 응시자의 제출서류에 의하여 응시자격요건을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7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시험(면접시험) : 적격성 심사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선발시험위원회」에서 면접시험을 통한 적격성 심사
- 각 위원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무수행요건(능력요건)을 검정
- ※ 직무수행요건(능력요건):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능력, 조직 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6.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가. 기 간: 2026. 11. 16.(월) ~ 11. 20.(금)

※ 근무시간(09:00~18:00) 내 제출[공휴일 및 중식·서류정리시간(11:30~13:00) 제외]

나. 접수방법: 방문 접수(검단구청 서관2층 총무과 인사팀)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우편 접수 시: 우편 발송 전에 반드시 제출서류를 이메일(스캔본)로 우선 제출 후 확인 전화 요망

- 주소: (23543) 인천광역시 검단구 독정로125번길 12, 인천 검단구 총무과 인사팀
- 이메일 주소: blizzard77@korea.kr
- 우편 접수 시 반드시 인사담당자(☎032-726-6233)를 통해 우편 접수 확인을 위한 전화 요망
-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우체국 통상환증서(응시수수료 상당) 동봉
- 응시표 이메일 송부 예정(응시원서 이메일 주소 기재 필요)
- 응시표는 면접시험 참석 시 출력하여 지참

다.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 <별지1호 서식>

- 응시수수료: 10,000원 상당 인천광역시검단구수입인증기날인
- 방문접수: 응시원서 수입증지첨부란에 인증기 날인
(검단구청 1층 민원여권과 내 판매)
- 우편접수: 우체국 통상환증서(기타 수입증지 및 현금 인정 불가)

② 이력서 1부 <별지2호 서식>

- 이력서상의 경력은 관련분야만 기재하고 증빙자료 필수(증빙자료가 없는

경력 인정하지 않음)

③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이내) <별지3호 서식>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10매 내외, 요약서 2매 이내) <별지4호 서식>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 없이 자유롭게 기술하되, 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함.

⑤ 최종학교졸업증명서(원본) 또는 학위증 사본 1부(석사, 박사)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와 같이 제출
 - 외국어로 된 증빙서류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박사 또는 석사학위 보유자인 경우 학위증명서 함께 제출

⑥ 학위·연구논문 요약서, 저서, 특허등록, 기타 연구개발이나 실적 증빙자료

- 연구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

⑦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경력(재직)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분야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인정되지 않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당해분야에서 근무하였음을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직접 기재 및 확인받아 제출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급), 주당 근무시간, 담당업무가 기재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 발급 서식에 주당 근무시간, 담당업무 등이 없을 경우 경력증명서 발급 인사담당자의 수기로 확인(날인) 받아 제출 가능

- 경력(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기업체)의 담당자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관련분야에 해당하는지 모호할 경우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 미제출 시 불인정

- 경력(재직)증명서로 직무분야 증빙이 안 될 경우 별도 증빙서류 제출 필요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민간근무경력의 경우 사업체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발급) 등 자료 첨부.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직장 폐업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발급) 등 자료 제출
- 외국어로 된 서류는 반드시 번역문(공증 필) 첨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 이어야 함.

⑧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에서 발급 가능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발급
- 미해당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제출 가능

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⑩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별지5호 서식>

⑪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별지6호 서식>

⑫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7호 서식>

⑬ 서류전형 제출 양식 <별지8호 서식>

⑭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별지9호 서식>

※ 안내사항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전 6개월 이내 발행분**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에 한하며,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 처리 되며, 임용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됨
- 상기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외국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제출 시 해당 대사관 공증된 서류만 인정

7. 보수수준

- 보수는 연봉제이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에 근거하여 5급 상당 연봉한계액 하한액 53,316천원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경력 및 자격요건 등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결정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8. 기타사항

- 응시자는 채용자격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불합격자가 원본 제출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및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제출서류(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는 게시된 소정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1인인 경우 또는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전일까지 7일 이상 추가 접수를 위해 재공고를 실시하고,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 7일 전에 인천광역시검단구청 홈페이지(<http://www.geomdan.go.kr>)에 공고합니다.
-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사람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시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청 총무과 인사팀 (☎032-726-62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개방형직위)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인천광역시검단구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우)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시표 (개방형직위)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분야 (응시직급)	
성명	(한글)	(한자)	
2026년 월 일 인천광역시검단구인사위원회위원장 ㉠			

주 의 사 항

-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2. 응시분야: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감사실장)를 기재
－ (응시직급):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지방행정사무관(행정5급), 지방일반임기제(개방형 5호) 등]
3. 주소: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 명을 기재
6. 응시수수료(인천광역시 검단구 수입증지): 인천광역시 검단구청 민원실에서
아래 해당 금액의 수입증지를 구입
－ 5급/가급 이상: 1만원, 6·7급/나급·다급: 7천원, 8·9급/라급·마급: 5천원
※ 응시수수료(인천광역시 검단구 수입증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청 민원실에서만 판매
※ 우편접수 시에는 해당금액을 우체국에서 소액환으로 교환하여 동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이 력 서

☐ 공통사항

응시 번호		응시 분야		성 명	
----------	--	----------	--	-----	--

※ 응시번호는 담당자 기재

☐ 응시자격(학위 및 관련분야 실무경력)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00학	0000년 00월 00일	학사
00학	0000년 00월 00일	석사

근무기관 (부서명)	근무기간(년월)	직 위	담당업무
00전자 (총무부)	0000년 00월 ~ 0000년 00월 (00년 00월)	과장	◦ ◦

《 경력사항 작성요령 》

- ① 경력사항은 면접시험 예정일부터 역산하여 담당 예정직무와 관련된 경력 및 업무실적을 기재
☞ 최근 경력·실적부터 기재
※ 근무기간, 담당업무 등이 경력증명서 내용과 일치해야 함.
※ 경력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서류[경력(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첨부.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경력이 인정되지 않음.
- ② 근무년월은 근무기간별 경력을 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15일 이상 근무시 1월로 계산)
예) 1년 2월 15일 → 1년 3개월
※ 다만,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 근무경력은 다음에 따라 근무경력을 기재
가.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로 기재
예) 시간임기제로 4년간 주 20시간 근무시 → 2년 기입
나.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등의 활동은 담당 예정직무와 연관성 여부 및 근무 기간
(시간)이 명확히 명시된 근거자료 제출 시에만 경력인정

위에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자기 소개서

지 원 동 기	
성 장 과 정	
경력 및 직무성과	
기 타 사 항	
2026. 응시자: (인)	

- ※ 분량은 A4 용지 2매 이내(신명조 13포인트)로 컴퓨터 문서편집 프로그램(한글)을 이용하여 작성
- ※ 경력 및 직무성과의 경우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경력별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작성
-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수행계획서

※ A4용지 10매 내외로 작성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제한)
<p>「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의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p>	<p>「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거 공공기관이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 정보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p>
<p>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p> <p>⇒ 응모한 개방형직위의 공개모집 시험자료로 활용</p> <p>⇒ 개방형직위 응시자격 요건과 관련한 제출 서류의 진위여부 검증</p> <p>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p> <p>⇒ 성명, 사진, 학력, 경력, 연락처, 자격증, 병역사항 등</p> <p>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p> <p>⇒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1년</p>	<p>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p> <p>⇒ 응모한 개방형직위의 공개모집 시험자료로 활용</p> <p>⇒ 개방형직위 응시자격 요건과 관련한 제출 서류의 진위여부 검증</p> <p>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p> <p>⇒ 주민등록번호</p> <p>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p> <p>⇒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1년</p>
<p>☐ 동의합니다.</p> <p>☐ 동의하지 않습니다.</p>	<p>☐ 동의합니다.</p> <p>☐ 동의하지 않습니다.</p>
<p>2026. . .</p> <p>성명: (인)</p>	<p>2026. . .</p> <p>성명: (인)</p>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인천광역시 검단구
2. 이용사무(이용목적): 신규채용 및 인사업무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1	주민등록표 등·초본 (병역사항 포함)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
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검단구청에서 시행하는 **개방형직위(감사실장) 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1) 제공받는 기관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발급 기관
- (2)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 (3) 제공하는 항목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사본
-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인천광역시검단구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반드시 본인 자필 서명 후 제출바랍니다.

서류전형 제출서류(양식)

※ 응시자에게 해당하는 내용에 한해서 작성하며, 【작성요령】은 삭제 후 제출

1. 학위 보유 현황

전공	학위 종류	학위취득(예정)일
OO학	학사	2005. 2. 28
OO학	석사	2007. 2. 28

【작성요령】

- ① 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전공
· 학위종류 · 취득(예정)일을 기재하여야 함
- ② 학사-석사-박사 학위 순으로 기재

2. 관련 분야 경력 및 주요 실적

근무기관 (부서포함)	근무기간	근무일수	직위(급)	주요업무실적
1. OO대학병원 가정의학과	20XX. X. X ~ 20XX. X. XX	○년 ○월 ○일	의사 (과장)	

【작성요령】

- ①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② 근무처는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일치할 것
- ③ 근무일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년월일수로 기재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면접)시험 최종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
· 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④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
- ⑤ 관리자 경력 요건 응시자는 직위(급) 기재시 반드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공식
직함을 기재하고 객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작성
- ⑥ 주요업무실적은 요약하여 50자 이내로 간략하면서 구체적으로 기재

3. 자격증 보유 현황

자격종목	자격증번호	자격증취득(예정)일	자격증 교부기관
1. 00자격증	XXXXXXX	20XX. X. X	00협회
2.			

【작성요령】

- ① 자격증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
종목 · 자격증번호 · 취득(예정)일 · 교부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4. 논문요약서

☐ 학위논문 주제

가. 석사논문

○ 제 목 :

○ 학위수여일 :

○ 주 제 :

○ 내용 요지(A4용지 1매 이내)

나. 박사논문

○ 제 목 :

○ 학위수여일 :

○ 주 제 :

○ 내용 요지(A4용지 1매 이내)

2026년 월 일
작성자 : (인/서명)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 응시자 본인이 해당하는 자격요건 괄호에 【✓】 표시하여 제출(중복표시 가능)

구분	자 격 요 건	
경 력 기 준	【 】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이하 “감사 관련 업무”라 한다)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4) 공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5)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6)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 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5급 경력경쟁채용 등의 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나.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임용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 】	7)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기술보건의세무 또는 환경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할 당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
	【 】	8) 중앙행정기관 외의 국가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중앙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기관의 관장 사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 감사 관련 업무: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		

작 성 자

(서 명)

<참고서식>

경 력 증 명 서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자택:	휴대폰:		
근 무 경 력					
입사일자	년 월 일	총 근무일수	년 월 일	주 근무시간	시간
퇴사일자	년 월 일				
근 무 세 부 내 역					
해당부서 근무기간	담당업무(구체적으로 기술)		직급(위)	특이사항	
~					
~					
~					
~					
~					
			담 당 자	(인)	
			문의전화	() -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관 명

직 인

※ 사업장에서 별도서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서식을 활용하되, 발급담당자 및 연락처, 근무기간, 주 근무시간, 담당업무는 반드시 기재

개방형직위 직무수행요건 명세서

I. 기본 사항

1. 소속기관	2. 직위명	3. 보직 가능한 공무원의 종류	4. 보직가능 직급
인천광역시 검단구	감사실장	일반직 또는 일반임기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일반임기제(5급상당)
5. 주요업무 내용			비중
1.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			(30)
2. 중앙행정기관의 감사수감 및 지시사항 처리			(10)
3. 시비·국비 등 회계감사 및 계산증명 등 검사·처리			(5)
4. 주요정책집행, 계약 등의 타당성을 점검·심사하는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10)
5. 민원·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등 공직기강에 관한 사항			(10)
6. 하명(첩보)사항 조사(수집)처리			(5)
7. 중앙부처 이첩민원 및 신문, 방송 등 언론보도사항 조사처리			(5)
8. 공직자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5)
9. 부패방지시책 및 청렴정책 수행			(10)
10. 기타 공직자 부정·비리예방 및 감사관련 시책추진 등			(10)
6. 관련 분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자율적인 자체감사 정착을 위한 기획·조정 및 조사·확인 분야			
7. 필요지식 및 기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에 대한 업무와 활동 등에 대하여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적법(행정상, 재정상, 신분상)하게 처리하고 개선 요구할 수 있는 능력			

II. 직무수행요건

1. 임용자격 요건	
가. 필수요건	<p>① 학력제한 ☒ 무 ☐ 유 (학력 요구수준:)</p> <p>② 필수 자격증 ☒ 무 ☐ 유 (종류 및 등급:)</p> <p>③ 기타 필수요건 ☒ 무 ☐ 유 (요건:)</p>
나. 경력 또는 실적 요건	<p>○ 다음의 경력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이하 “감사 관련 업무”라 한다)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공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제4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래의 요건을 갖춘 사람 <p>《대통령령(「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요건》</p> <p>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앞쪽 2번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p>

<p>나. 경력 또는 실적 요건</p>	<p>가.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해당 기관의 관장사무와 관련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5급 경력 경쟁채용 등의 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p> <p>나.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해당 기관의 관장사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임용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p> <p>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p> <p>③ 중앙행정기관 외의 국가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 관장사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p>
<p>2. 능력요건</p>	<p>가. 전문가적 능력</p> <p>①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p> <p>② 새로운 지식 및 정보의 수집·분석 능력</p> <p>③ 종합적 판단력 및 정책결정 능력</p> <p>나. 전략적 리더십</p> <p>① 비전제시 및 혁신지향 능력</p> <p>② 전략적 사고 및 전략수집 능력</p> <p>③ 유연하고 전향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능력</p> <p>다. 변화관리 능력</p> <p>① 문제에 대한 사전예측과 예방조치 능력</p> <p>② 문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능력</p> <p>③ 고객지향성 및 새로운 사고방식의 전파 능력</p> <p>라. 조직관리 능력</p> <p>① 팀워크 형성 및 목표공유 능력</p> <p>② 업무개선 능력</p> <p>③ 자원활용 능력</p> <p>마.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p> <p>① 대국민 공감대 형성 능력</p> <p>②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p> <p>③ 효과적인 협상 및 설득 능력</p>

3. 특별요건

가. 자격증 ☒ 무 ☐ 유

나. 외국어 ☒ 무 ☐ 유

다. 정보화능력 ☒ 무 ☐ 유

라. 기타 특별요건 ☒ 무 ☐ 유